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1996. 12. 26.

산업.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11. 2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12. 20
- 라. 상정일자 : 1996. 12. 26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가. 제안이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징수 목적규정을 둠(안 제1조).
-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자로 규정함(안 제2조).
- 벌표로 부과기준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정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토록 규정함(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시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토록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 종별과 해당금액을 서면에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토록 함(안 제5조).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 번	안 호
	122

제출년월일 : 1996. 11. 21.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 안 이 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과태료 부과징수 목적규정을 둠(안 제1조).
- 나.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자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별표로 부과기준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정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토록 규정함(안 제3조).
- 라. 과태료 부과시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토록 규정함(안 제4조).
- 마. 시장이 과태료 부과할때에는 그 위반행위 증별과 해당금액을 서면에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토록 함(안 제5조).
- 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제3조(부과기준 및 금액)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법정 최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부과·징수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한다.

②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지·납부등) ①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 종별과 해당금액을 서면에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조(이의신청)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만원)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부 과 기 준			비 고
		1회	2회	3회	
1. 고압가스제조자의 변경신고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고압가스제조자가 변경신고를 하지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고법 제4조 제2항	100	200	300	
2. 시공기록등의 보존					
가. 가스공급시설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 그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액법 제17조	50	100	200	
3. 공급시설등의 임시사용					
가. 가스공급·제조·저장·판매시설등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정하여진 기간 및 사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때	고법 제16조 제3항	100	200	300	제조
		50	100	200	판매, 저장
	액법 제19조 제2항	50	100	200	
4. 완성검사 등					
가. 가스사용신고 대상자가 그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전에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 제4항	50	100	200	
	액법 제29조 제4항	50	100	200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부 과 기 준			비 고
		1회	2회	3회	
나. 가스사용신고 대상자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 제3항	50	100	200	
	액법 제29조 제3항	50	100	200	
5. 자체검사					
가.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집단공급 시설등에 대한 자체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고법 제12조 제1항	50	100	200	
	액법 제11조 제1항	50	100	200	
6. 공급자의 의무등					
가.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스 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그 사실 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0조 제3항	50	100	200	
	액법 제9조 제3항	50	100	200	
나. 가스사용자가 그 사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0조 제4항	30	60	100	
	액법 제9조 제4항	30	60	100	
7. 가스공급의 의무					
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수요 자에게 가스공급을 거절할 때	액법 제25조	100	200	300	
8.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가스공급 규정을 영업소, 사업소등의 보기쉬 운 곳에 게시하지 아니한 때	액법 제28조	50	100	200	

위 반 사 함	관련법규	부 과 기 준			비 고
		1회	2회	3회	
9. 판매의 제한					
가. 가스의 판매제한 지역과 건물안의 가스수요자에게 용기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한 때	액법 제24조 제4항	50	100	200	
나. 사업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때	액법 제24조 제3항	50	100	200	
10.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등					
가. 사업개시 또는 사용개시 신고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1조 제1항	100	200	300	제조
		50	100	200	판매, 저장
	액법 제10조 제1항	100	200	300	충전
		50	100	200	공급, 판매 저장
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1조 제4항	100	200	300	제조
		50	100	200	판매, 저장
	액법 제10조 제4항	100	200	300	충전
		50	100	200	공급, 판매 저장
다. 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1조 제5항	100	200	300	제조
		50	100	200	판매, 저장
	액법 제10조 제5항	50	100	200	
11. 자체안전교육					
가. 자체안전교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체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	100	200	300	제조
		50	100	200	저장, 냉동
	액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3항	100	200	300	충전
		50	100	200	저장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부 과 기 준			비 고
		1회	2회	3회	
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3조의2 제2항	100	200	300	제조
		50	100	200	저장, 냉동
12. 안전성평가					
가. 안전성합상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3조의2 제2항	100	200	300	제조
		50	100	200	저장, 냉동
13.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등					
가. 고압가스판매자등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3조 제4항	50	100	200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지 않거나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때	액법 제12조 제4항	100	200	300	
다.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고법 제13조 제3항 액법 제12조 제3항	50	100	200	
		50	100	200	
14.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5조 제3항	100	200	300	제조
		50	100	200	판매, 저장 신고
	액법 제14조 제3항	100	200	300	충전
		50	100	200	공급, 판매 저장, 신고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부 과 기 준			비 고
		1회	2회	3회	
15. 허가관청의 조치					
가.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이전, 사용정지등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고법 제24조 액법 제32조	50 50	100 100	200 200	
16. 보험가입					
가.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5조 제1항 액법 제33조 제1항	100 50 100 50	200 100 200 100	300 200 300 200	제조 판매, 저장 신고 충전 공급, 판매 저장, 신고
1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고법 제28조 의2	100 50	200 100	300 200	제조 판매, 저장 신고
18. 사고의 통보					
가.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때	고법 제26조 의2 제1항 액법 제35조 의2 제1항	50 50	100 100	200 200	
19. 보고 등					
가. 가스사업자들이 허가관청, 등록관청, 신고관청등에서 명한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6조 제1항 액법 제35조 제1항	50 50	100 100	200 200	

(단위:만원)

위 반 사 함	관련법규	부과기준(규칙)			비 고
		1회	2회	3회	
비 고					
1. 위반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 기간중의 위반횟수임.					
2. 고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법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칭함.					
3. 고법의 제조는 고압가스제조사업자, 판매는 고압가스판매사업자, 저장은 고압가스 저장자, 신고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냉동은 냉동설비설치자를 칭하며, 액법의 충전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공급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판매는 액화 석유가스판매사업자, 저장은 액화석유가스저장자, 신고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를 칭함					